

협동조합 실무자들을 위한 4월 Check point



코로나19, 직장가입자 4대보험지원제도 소개

1. 고용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신청 필요

지원대상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지원기간	부과고지	'20.3~5월분 보험료(총 3개월)
	자진신고 (건설업, 별목업)	일시납(납기일 '20.3.31.)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신청	부과고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징수포털 (si4n.nhis.or.kr)
	자진신고 (건설업, 별목업)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인 자영업자이거나,
특수고용직종사자인 경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별목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해야하고,
기타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징수포털**로
신청 해야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2) 산재보험료 경감 :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및 특수고용직 고용 사업장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총 6개월)
	자진신고 (건설업, 별목업)	'20.4~9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 감면

※ 고용보험은 보험료 경감이 없으며,
산재보험료는 요건에 해당하면 경감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인 자영업자이거나,
특수고용직종사자이거나,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장이면
산재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특별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실무적용 Q&A

Q. 우리 협동조합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을
임금대장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 Step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 요건	해당 여부
30인 미만 사업장?	O/X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사업장?	O/X
특수고용직종사자?	O/X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장?	O/X

※ 하나라도 해당 하면 지원대상

**Step 2. 임금대장에 4대보험료 공제를
고지서 기준으로 하는지 요율 기준**으로 하는지?

지원 요건	해당 여부
고지서 기준	고지서에 보험료가 경감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액수 기재
보험요율 기준	Step3. 로 가세요

**Step 3. 4대보험료 공제를 요율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업, 별목업 제외)**

⇒ '20 3~8월 분 보험료를 이전처럼 요율을 곱해 계산 한 후,
70/100을 곱하여 공제

2. 건강보험

(1)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신청 불필요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산정보험료 86,920원 이하) ※ 가입자부담금 기준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	'20.3~5월분 보험료(총 3개월)
	지원범위	부과보험료의 50%

(2) 그 밖의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 ②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40% 이하 (산정보험료 58,360원 초과 74,210원 이하) ※ 가입자부담금 기준	
지원기간	'20.3~5월분 보험료(총 3개월)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부과보험료의 50%
	②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40% 이하	부과보험료의 30%

-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 ※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 ※ 산정보험료는 전체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 ※ 산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경감됩니다.

2. 건강보험 실무적용 Q&A

Q. 우리 협동조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임금대장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 **Step 1.** 우리 협동조합 위치가 특별재난지역인지?

지원 요건	해당 여부
대구/경산/청도/봉화에 위치해 있는지?	Step 2로 가세요
기타 지역인지?	Step 3로 가세요

Step 2. 원래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86,920원 이하인지?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기준)
⇒ 부과 보험료의 50% 경감 ⇒ Step 4로 가세요

Step 3.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요건	해당 여부
원래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58,360원 이하	Step 4로 가세요
원래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58,360원 초과 74,210원 이하	Step 4로 가세요

Step 4. 임금대장에 4대보험료 공제를
고지서 기준으로 하는지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원 요건	해당 여부
고지서 기준	고지서에 보험료가 경감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액수 기재
보험요율 기준	Step5. 로 가세요

Step 5. 4대보험료 공제를 요율 기준으로 하는 경우
⇒ '20 3~5월 분 보험료를 이전처럼 요율을 곱해 계산 한 후,
보험료 경감률분을 제외하고 공제

3. 국민연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필요

지원대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원기간	'20. 3~6월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납부예외 하려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 신청기간 이후 소급 납부예외 신청 불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인터넷 채널(EDI 및 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 불가

- ※ 국민연금을 수급하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므로 납부예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사업주가 증빙해야 합니다.
- ※ '납부예외 하려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이후 소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 전산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 서식 및 구체적 절차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2)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 불필요

특별재난 관리지역	대구, 청도	'20. 2~8월(총 7개월)
	경산, 봉화	'20. 3~8월(총 6개월)
전국	'20. 3~5월(총 3개월)	

(3)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 필요

지원대상	여행업, 공연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지원기간	'20. 3~9월(총 7개월)
신청기간	납부기한까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인터넷 채널(EDI 및 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소급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 불가

- ※ 특별재난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부터 5월까지 연체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 연체금 징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전산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합니다.
- ※ 신청 서식 및 구체적 절차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